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출이유

가. 2008. 5월부터 사용중인「외국인주민」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자문 기능에 머문「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에 자치단체 지원시책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참여 확대 등 기능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성주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나.**「외국인주민」용어 반영**

다. **외국인 지원범위확대**

・ 지원대상에 외국인, 외국투자기업 사업활동 지원 추가

라.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과반수 참여 의무화 등 역할 강화

4. 관련법령

가. 재한 외국인 처우개선법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의 배경은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5월부터 거주외국인에 대한 명칭이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조례상의 자구수정 필요성과 거주외국인에 대한 경제적, 제도적 활동의 규범을 정립하여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주민에의 대상에 확대 적용하여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그 배경입니다.

○ 주요내용은

· 조례제명을 「성주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성주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며,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포함, 그리고 외국인 지원 범위를 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 지원 추가 및 실질적 외국인의 정책배려를 위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에 외국인 포함의 규정을 두어 단순자문기능에서 사실적 현실적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부합하는 '각 시군별 세계인의 날'을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설정추진입니다. 특히, 개정안 제3조 제2항에 의거 군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의 기능과 제7조 제3항 위원회 구성에 외국인 주민의 참여기회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외국인 주민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결론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 주민의 권리 신장을 표현하고, 포괄적 주민의 개념에 포함하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칠곡, 고령과 더불어 도내 군지역 중 3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조속히 시행되어 현 다문화가정 및 외국근로자에게 성주군 주민의식함양에 그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법적근거를 위한「성주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의 형식면은 외국인 주민 지원표준 조례안에 부합하고 절차적 요건이 입법예고 등 적법· 타당성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제출이유

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나.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을 통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안내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정보공유 근거

3. 주요내용

가. 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안 제5조)

·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 사용

나.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안 제6조)

· 성주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

다.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8조)

· 도로명주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

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점검(안 제9조)

·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

4. 관련법령

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5. 검토의견

□ 제출자,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2009.4. 2. 「도로명주소법」이 법률 제9569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성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성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주내용인 '도로명 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 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제5조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제11조 광고의 표시방법 등, 제17조 위원회구성, 제25조 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기본방향은 국가의 도로명주소 관련정보와 변동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대장을 도입하고 광역적 차원의 도로명 부여체계 마련 등 국가의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에 부합하게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성주군수는 2012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원인자 부담금 원칙으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비용발생에 따라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집행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새주소 설정에 군민의 저항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 생활습득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시설물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